

무배당 롯데 신탁제공용
퇴직연금보험

약관

무배당 롯데 신탁제공용 퇴직연금보험 약관

제1조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 약관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9조에 의하여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일환으로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퇴직연금 이율보증형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업자”라 함은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2. “보험료”라 함은 신탁업자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보험금”이라 함은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약관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약관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보험기간)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제4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는 신탁업자로 합니다.

제5조 (신탁업자의 수행업무)

- ① 신탁업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해 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신탁업자는 이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6조 (회사의 수행업무)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보험료의 수령
2.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의 지급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 (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전문을 통한 전자적 거래시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이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분<원본의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전달하고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신たく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신たく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신たく업자가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합니다)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신たく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회사는 이 계약을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합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12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3조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수익자에게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율보증형 적용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5조~제17조는 이율보증형에 관한 사항으로 이율보증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15조 (이율보증형 단위보험)

- ① 회사는 계약자에 의하여 납입되는 보험료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합니다. 이때, 각 단위 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합니다.
- ② 회사는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1년, 2년, 3년, 4년, 5년, 만기지정식)동안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③ 제2항의 이율보증형 만기지정식의 설정은 1년 초과 2년 미만 일 단위, 2년 초과 3년 미만 일 단위, 3년 초과 4년 미만 일 단위 또는 4년 초과 5년 미만 일 단위 기간 중 계약자가 지정하는 특정일까지로 하며, 확정급여형제도에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 ④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만기지정식의 경우에는 이율보증기간이 1년인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6조 (이율보증형 이율의 적용)

- ① 이 계약의 적립금에 대한 적용이율은 (별지1) 이율보증형 이율의 적용방식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결정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만기지정식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지정한 보증기간의 연 미만 기간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인 경우 절사, 6개월 초과인 경우 절상한 후 해당기간의 연 단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7조 (이율보증형 상품의 해지환급금)

- ① 이율보증형 단위보험이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계약해지시점	중도해지이율
이율보증형(1년)	11개월미만	적용이율 × 90%
	11개월이상~1년미만	적용이율
이율보증형(2년)	1년미만	적용이율 × 85%
	1년이상~1년11개월미만	적용이율 × 95%
	1년11개월이상~2년미만	적용이율
이율보증형(3년)	1년미만	적용이율 × 75%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 × 85%
	2년이상~2년11개월미만	적용이율 × 95%
	2년11개월이상~3년미만	적용이율
이율보증형(4년)	1년미만	적용이율 × 65%

	1년이상 ~ 2년미만	적용이율 × 75%
	2년이상 ~ 3년미만	적용이율 × 85%
	3년이상~3년11개월미만	적용이율 × 95%
	3년11개월이상~4년미만	적용이율
이율보증형(5년)	1년미만	적용이율 × 55%
	1년이상 ~ 2년미만	적용이율 × 65%
	2년이상 ~ 3년미만	적용이율 × 75%
	3년이상 ~ 4년미만	적용이율 × 85%
	4년이상~4년11개월미만	적용이율 × 95%
	4년11개월이상~5년미만	적용이율

[만기지정식 이율보증형]

만기지정식 이율보증형보험의 연 미만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 (X월)로 환산하여 적용하되,
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로 절상하여 계약해지시점을 적용한다.

구 분	계약해지시점	중도해지이율
이율보증형 (1년1개월)	11개월미만	적용이율 × 85%
	11개월이상~1년미만	적용이율 × 95%
	1년이상~1년1개월미만	적용이율
이율보증형 (1년1개월 초과 ~ 2년 미만)	1년미만	적용이율 × 85%
	1년이상~1년(X-1)개월미만	적용이율 × 95%
	1년(X-1)개월이상~2년미만	적용이율
이율보증형 (2년1개월)	1년미만	적용이율 × 75%
	1년이상~1년11개월미만	적용이율 × 85%
	1년11개월이상~2년미만	적용이율 × 95%
	2년이상~2년1개월미만	적용이율
이율보증형 (2년1개월 초과 ~ 3년 미만)	1년미만	적용이율 × 75%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 × 85%
	2년이상~2년(X-1)개월미만	적용이율 × 95%
	2년(X-1)개월이상~3년미만	적용이율
이율보증형 (3년1개월)	1년미만	적용이율 × 65%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 × 75%
	2년이상~2년11개월미만	적용이율 × 85%
	2년11개월이상~3년미만	적용이율 × 95%
	3년이상~3년1개월미만	적용이율
이율보증형 (3년1개월 초과 ~ 4년 미만)	1년미만	적용이율 × 65%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 × 75%
	2년이상~3년미만	적용이율 × 85%
	3년이상~3년(X-1)개월미만	적용이율 × 95%
	3년(X-1)개월이상~4년미만	적용이율
이율보증형 (4년1개월)	1년미만	적용이율 × 55%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 × 65%
	2년이상~3년미만	적용이율 × 75%
	3년이상~3년11개월미만	적용이율 × 85%
	3년11개월이상~4년미만	적용이율 × 95%
	4년이상~4년1개월미만	적용이율
이율보증형 (4년1개월 초과 ~ 5년 미만)	1년미만	적용이율 × 55%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 × 65%

	2년이상~3년미만	적용이율 × 75%
	3년이상~4년미만	적용이율 × 85%
	4년이상~4년(X-1)개월미만	적용이율 × 95%
	4년(X-1)개월이상~5년미만	적용이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특별한 사유로 인한 해지 시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확정급여형

가.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나.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다.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라.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마.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바. 가입자가 확정기여형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사. 법 16조 제4항에 의해 반환되는 경우

아.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만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하거나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자. 단위보험 만기일 이전에 이율보증기간에서 경과기간을 차감한 기간 이상의 이율보증기간을 갖는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하는 경우

단, 아래의 표와 같이 계약을 변경 또는 유지하는 경우에만 적용

기존		변경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회사 이외	회사 이외	회사	회사
		회사	회사 이외
		회사 이외	회사
		회사 이외	회사 이외
회사	회사 이외	회사	회사
		회사	회사 이외

차. 상기 각 목의 사유 이외에 관계사의 진출입 등 가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2. 확정기여형 및 기업형 IRP

가.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기업형IRP의 경우 가입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나.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다.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라.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마.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바. 가입자가 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인하여 중도인출 하는 경우

사.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만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하거나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아. 상기 각 목의 사유 이외에 관계사의 진출입 등 가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3. 개인형 IRP

가.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라.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마. 가입자가 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인하여 중도인출 하는 경우

바.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만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하거나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사. 상기 각 목의 사유 이외에 가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제18조~제20조는 이율보증형Ⅱ에 관한 사항으로 이율보증형Ⅱ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18조 (이율보증형Ⅱ 단위보험)

- ① 회사는 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합니다. 이때,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합니다.
- ②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사용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의 보증기간(3년, 4년, 5년 등)을 설정하며, 회사는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단, 확정급여형제도에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 ③ 사용자는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시점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합니다.

제19조 (이율보증형Ⅱ 이율의 적용)

이 계약의 적립금에 대한 적용이율은 (별지2) 이율보증형Ⅱ 이율의 적용방식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결정합니다.

제20조(이율보증형Ⅱ 상품의 해지환급금)

- ① 이율보증형Ⅱ 단위보험이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계약해지시점	중도해지이율
이율보증형Ⅱ (3년)	1년미만	적용이율 × 65%
	1년이상 ~ 2년미만	적용이율 × 75%
	2년이상~3년미만	적용이율 × 85%
이율보증형Ⅱ (4년)	1년미만	적용이율 × 55%
	1년이상 ~ 2년미만	적용이율 × 65%

이율보증형 II (5년)	2년이상 ~ 3년미만	적용이율 × 75%
	3년이상~4년미만	적용이율 × 85%
	1년미만	적용이율 × 45%
	1년이상 ~ 2년미만	적용이율 × 55%
	2년이상 ~ 3년미만	적용이율 × 65%
	3년이상 ~ 4년미만	적용이율 × 75%
	4년이상~5년미만	적용이율 × 8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특별한 사유로 인한 해지 시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나.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다.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라.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마.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바. 가입자가 확정기여형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사. 법 16조 제4항에 의해 반환되는 경우

아.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만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하거나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자. 단위보험 만기일 이전에 이율보증기간에서 경과기간을 차감한 기간 이상의 이율보증기간을 갖는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하는 경우

단, 아래의 표와 같이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적용

기존		변경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회사 이외	회사 이외	회사	회사
		회사	회사 이외
		회사 이외	회사
		회사 이외	회사 이외
회사	회사 이외	회사	회사
		회사	회사 이외

차. 상기 각 목의 사유 이외에 관계사의 진출입 등 가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제21조 (분쟁의 조정)

이 약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약관의 조항해석에 관하여 신탁업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신탁업자,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24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신탁업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제25조 (예금자보호 안내)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됩니다. 단, 확정급여형은 예금자보호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칙**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18년 3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19년 11월 XX일부터 시행합니다.

(별지1) 이율보증형 이율의 적용방식

(별지1)

이율보증형 이율의 적용방식

1. 이 보험의 적립금 계산 시 적용하는 이율은 적용이율로 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적용이율의 계산

회사는 매월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시장상황, 회사손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단, 적용이율은 산출된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합니다.

< 1년 이율보증형, 만기지정식(1년초과~1년6개월이하 일단위) >

○ 지표금리(%) = (A1 + B1 + C1) / 3

· A1 : 국고채(1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 B1 : 회사채(1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2년 이율보증형, 만기지정식(1년6개월초과~2년6개월이하 일단위) >

○ 지표금리(%) = (A2 + B2 + C1) / 3

· A2 : 국고채(2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 B2 : 회사채(2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3년 이율보증형, 만기지정식(2년6개월초과~3년6개월이하 일단위) >

○ 지표금리(%) = (A3 + B3 + C1) / 3

· A3 : 국고채(3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 B3 :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4년 이율보증형, 만기지정식(3년6개월초과~4년6개월이하 일단위) >

○ 지표금리(%) = (A4 + B4 + C1) / 3

· A4 : 국고채(4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 B4 : 회사채(4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5년 이율보증형, 만기지정식(4년6개월초과~5년미만 일단위) >

○ 지표금리(%) = (A5 + B5 + C1) / 3

· A5 : 국고채(5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 B5 : 회사채(5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주) ① 국고채수익률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의 채권평가사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의 평균값 (민평평균)

② 회사채수익률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회사채의 채권평가사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의 평균값 (민평평균)

③ 통화안정증권수익률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1년물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

④ 평균값은 적용개시일 기준 전월의 1일부터 15일까지의 해당수익률을 산술 평균함

- (2) (1)호의 적용이율은 회사가 산출하여 결정하며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각각의 보험료 납입 건 별로 이율보증기간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 (3)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적용이율 산출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출방식을 변경할 경우에는 유지되고 있는 이율보증형 상품에 대해서는 (2)호에서 정한 적용이율별 적용기간 이후부터 적용합니다.
- (4) 지표금리를 산출하는 시점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최종호가수익률, 채권평가사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의 평균값이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시장지표가 되는 다른 수익률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세부적인 적용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적용이율운용지침을 따릅니다.

(별지2)

이율보증형Ⅱ 이율의 적용방식

1. 이 보험의 적립금 계산 시 적용하는 이율은 적용이율로 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적용이율의 계산

회사는 매월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시장상황, 회사손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단, 적용이율은 산출된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합니다.

< 이율보증형Ⅱ 3년 >

- 지표금리(%) = (A3 + B3 + C1) / 3
 - A3 : 국고채(3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 B3 :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이율보증형Ⅱ 4년 >

- 지표금리(%) = (A4 + B4 + C1) / 3
 - A4 : 국고채(4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 B4 : 회사채(4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이율보증형Ⅱ 5년 >

- 지표금리(%) = (A5 + B5 + C1) / 3
 - A5 : 국고채(5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 B5 : 회사채(5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주) ① 국고채수익률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의 채권평가사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의 평균값 (민평평균)
- ② 회사채수익률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회사채의 채권평가사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의 평균값 (민평평균)
- ③ 통화안정증권수익률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1년물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
- ④ 평균값은 적용개시일 기준 전월의 1일부터 15일까지의 해당수익률을 산술 평균함

(2) (1)호의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은 설정된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이율보증형Ⅱ 3년 적용이율

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의 적용이율('1년차 적용이율')을 단위보험 설정일 부터 1년 동안 확정 적용

나. 각 단위보험별 ‘2년차 적용이율’은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 속한 달의 적용이율로, 회사가 공시하는 이율보증형 2년형의 공시이율과 ‘1년차 적용이율’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며,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부터 1년간 확정 적용

다. 각 단위보험별 ‘3년차 적용이율’은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 속한 달의 적용이율로, 회사가 공시하는 이율보증형 1년형의 공시이율과 ‘1년차 적용이율’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며,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부터 1년간 확정 적용

[이율보증형Ⅱ 3년 적용이율의 적용 예시]

20X1년 12월 이율보증형Ⅱ 3년 공시이율이 2.50%(‘1년차 적용이율’), 20X2년 12월 이율보증형 2년형 공시이율이 2.60%, 20X3년 12월 이율보증형 1년형 공시이율이 2.40% 일 때, 20X1년 12월31일 이율보증형Ⅱ 3년 가입 후 3년 동안 적용이율은 경과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분	적용이율	비고
20X1년12월31일~ 20X2년12월30일	연2.50%	1년차 적용이율(2.50%)
20X2년12월31일~ 20X3년12월30일	연2.60%	1년차 적용이율(2.50%)이 이율보증형 2년형 공시이율 (2.60%)보다 낮으므로 이율보증형 2년형 공시이율 (2.60%)적용
20X3년12월31일~ 20X4년12월30일	연2.50%	1년차 적용이율(2.50%)이 이율보증형 1년형(2.40%) 보 다 높으므로 1년차 적용이율(2.50%)적용

2) 이율보증형Ⅱ 4년 적용이율

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의 적용이율(‘1년차 적용이율’) 을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1년 동안 확정 적용

나. 각 단위보험별 ‘2년차 적용이율’은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 속한 달의 적용이율로, 회사가 공시하는 이율보증형 3년형의 공시이율과 ‘1년차 적용이율’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며,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부터 1년간 확정 적용

다. 각 단위보험별 ‘3년차 적용이율’은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 속한 달의 적용이율로, 회사가 공시하는 이율보증형 2년형의 공시이율과 ‘1년차 적용이율’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며,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부터 1년간 확정 적용

라. 각 단위보험별 ‘4년차 적용이율’은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3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 속한 달의 적용이율로, 회사가 공시하는 이율보증형 1년형의 공시이율과 ‘1년차 적용이율’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며,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3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부터 1년간 확정 적용

[이율보증형Ⅱ 4년 적용이율의 적용 예시]

20X1년 12월 이율보증형Ⅱ 4년 공시이율이 2.50%(‘1년차 적용이율’), 20X2년 12월 이율보증형 3년형 공시이율이 2.60%, 20X3년 12월 이율보증형 2년형 공시이율이 2.40%, 20X4년 12월 이율보증형 1년형 공시이율이 2.55% 일 때, 20X1년 12월31

일 이율보증형Ⅱ 4년 가입 후 4년 동안 적용이율은 경과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분	적용이율	비고
20X1년12월31일~ 20X2년12월30일	연2.50%	1년차 적용이율(2.50%)
20X2년12월31일~ 20X3년12월30일	연2.60%	1년차 적용이율(2.50%)이 이율보증형 3년형 공시이율(2.60%)보다 낮으므로 이율보증형 3년형 공시이율(2.60%)적용
20X3년12월31일~ 20X4년12월30일	연2.50%	1년차 적용이율(2.50%)이 이율보증형 2년형(2.40%) 보다 높으므로 1년차 적용이율(2.50%)적용
20X4년12월31일~ 20X5년12월30일	연2.55%	1년차 적용이율(2.50%)이 이율보증형 1년형(2.55%) 보다 낮으므로 이율보증형 1년형 공시이율(2.55%)적용

3) 이율보증형Ⅱ 5년 적용이율

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의 적용이율(‘1년차 적용이율’) 을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1년 동안 확정 적용

나. 각 단위보험별 ‘2년차 적용이율’은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 속한 달의 적용이율로, 회사가 공시하는 이율보증형 4년형의 공시이율과 ‘1년차 적용이율’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며,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부터 1년간 확정 적용

다. 각 단위보험별 ‘3년차 적용이율’은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 속한 달의 적용이율로, 회사가 공시하는 이율보증형 3년형의 공시이율과 ‘1년차 적용이율’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며,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부터 1년간 확정 적용

라. 각 단위보험별 ‘4년차 적용이율’은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3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 속한 달의 적용이율로, 회사가 공시하는 이율보증형 2년형의 공시이율과 ‘1년차 적용이율’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며,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3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부터 1년간 확정 적용

마. 각 단위보험별 ‘5년차 적용이율’은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4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 속한 달의 적용이율로, 회사가 공시하는 이율보증형 1년형의 공시이율과 ‘1년차 적용이율’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며,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4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부터 1년간 확정 적용

[이율보증형Ⅱ 5년 적용이율의 적용 예시]

20X1년 12월 이율보증형Ⅱ 5년 공시이율이 2.50%(‘1년차 적용이율’), 20X2년 12월 이율보증형 4년형 공시이율이 2.60%, 20X3년 12월 이율보증형 3년형 공시이율이 2.40%, 20X4년 12월 이율보증형 2년형 공시이율이 2.55%, 20X5년 12월 이율보증형 1년형 공시이율이 2.45% 일 때, 20X1년 12월31일 이율보증형Ⅱ 5년 가입 후 5년 동안 적용이율은 경과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분	적용이율	비고
20X1년12월31일~ 20X2년12월30일	연2.50%	1년차 적용이율(2.50%)
20X2년12월31일~ 20X3년12월30일	연2.60%	1년차 적용이율(2.50%)이 이율보증형 4년형 공시이율(2.60%)보다 낮으므로 이율보증형 4년형 공시이율(2.60%)적용
20X3년12월31일~ 20X4년12월30일	연2.50%	1년차 적용이율(2.50%)이 이율보증형 3년형(2.40%) 보다 높으므로 1년차 적용이율(2.50%)적용
20X4년12월31일~ 20X5년12월30일	연2.55%	1년차 적용이율(2.50%)이 이율보증형 2년형(2.55%) 보다 낮으므로 이율보증형 2년형 공시이율(2.55%)적용
20X5년12월31일~ 20X6년12월30일	연2.50%	1년차 적용이율(2.50%)이 이율보증형 1년형(2.45%) 보다 높으므로 1년차 적용이율(2.50%)적용

- (3)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적용이율 산출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출방식을 변경할 경우에는 유지되고 있는 이율보증형Ⅱ 상품에 대해서는 (2)호에서 정한 적용이율별 적용기간 이후부터 적용합니다.
- (4) 지표금리를 산출하는 시점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최종호가수익률, 채권평가사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의 평균값이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시장지표가 되는 다른 수익률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세부적인 적용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적용이율운용지침을 따릅니다.